

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(폐쇄)신고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일자	처리기간 3일
신고인	상호(명칭)		
	성명(대표자)		생년월일
	주소(사업장소재지)		전화번호
변경사유			
착공예정일		준공예정일	
년 월 일		년 월 일	
변경사항	변 경 전		변 경 후
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			
토양오염방지 시설			
그 밖의 사항			
신고증명서 분실사유	신고증명서를 분실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		

「토양환경보전법」 제12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(폐쇄)사항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신고증명서 원본 2. 변경(폐쇄)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		수수료 없음					
처리절차								
신고서 작성 신고인	→	접 수 시 · 군 · 구	→	검 토 시 · 군 · 구	→	결 재 시 · 군 · 구	→	신고증명서 교부